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일, 윤영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2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구민 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며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위원회로 변경 및 정의 재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명시(안 제5조).
- 위원장 직무 및 정례회의 재정비(안 제6조 및 안 제7조).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이 상이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 사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함에 따라 기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신설,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